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730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윤후덕의원안)	2

I. 개요

1.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73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1. 22.
- (3) 회 부 일 : 2025. 1.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는 대부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감면제도만 있을 뿐 기존 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는 부재함.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의 신규 채용도 필요하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된 기존의 숙련 근로자가 이직 없이 장기재직토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에 중소기업체에 10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 9 신설).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윤후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소득세 감면특례 신설 (안 제29조의9 신설) ○ 감면요건 -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근로자로서 2026년 1월 1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속연수가 10년 미만 ※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외 ○ 감면기한 - 2035년 12월 31일까지 ○ 감면율 -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5% -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 10% - 소득 지급일 현재 근속연수 15년 이상 : 15% ○ 시행일 : 2026.1.1.

*윤후덕의원안 2025.1.22.제출 (의안번호 7730)

☐ 개정안은 중소기업체에 재직하고 있는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향후 10년간(2026.1.1.부터 2035.12.31.까지)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의 5%~15%를 2035년까지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근속연수가 10년 미만인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율도 5%(근속연수 5년 이상 10년 미만), 10%(근속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 15%(근속연수 15년 이상)로 높아지도록 하는 것임.

□ 개정안은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장기재직자는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에 필요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하여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장기재직이 필요함¹⁾.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수준과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장기재직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실정이어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 방지 및 장기재직을 위한 유인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존재하였음.²⁾

실제로 통계청의 “2023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2025. 2. 25.)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8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593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5.0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5.6년) 및 대기업 근로자(8.0년)에 비해 짧은

1) 또한, 인력의 이직이 빈번한 경우 대체인력의 채용 및 양성을 위한 비용이 소요되고, 핵심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2016. 11., p. 4).

2)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 건의서”, 2020. 3., pp. 35~36.

것으로 나타남.³⁾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직원 중 10년 이상 장기재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중소기업의 경우 16.4%, 중소기업서비스업의 경우 15.8%에 불과하였음⁴⁾.

□ 다만, 개정안은 다음의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등과 비교하여 개정안에 따른 1인당 세금 감면 규모가 크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소득은 298만원으로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소득 593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이처럼 낮은 임금수준 등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⁵⁾. 그런데 2023년 근로소득자의 결정세액 기준 1천만원 이하의 결정세액 대상자가 전체 신고 인원의 91% 내외로 개정안에 따른 평균 감면세액은 최대 23.7만원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재직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⁶⁾ 한편,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장기재직 하는 경향이 나

3) 2023년 일자리 행정통계, 통계청, 2024.12.6

4)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2024.12.31

5) 고용노동부의 “2019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19. 10., p. 15.)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인력 미충원사유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기 때문’(23.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월 급여가 5백만 원인 경우, 소득세는 월 16만원 수준으로 5%~15% 감면 적용 시 감면액은 월 8천원~2.4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장기근무 유인으로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입장임.

타난다는 점⁷⁾에서 기(既) 장기 근속 해당자들 중 고소득자들에 대한 역진적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내일채움공제⁸⁾와 그 공제금 만기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⁹⁾ 등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핵심인력¹⁰⁾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 중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존에 중소기업등에서 장기근속중인 근로자와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음. 개정안은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10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소득세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일 기업 내에 10년 이상 근속한 자

7)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금수준별 5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100~150만원인 경우 17.9%에 불과한 반면, 150~200만원인 경우 25.8%, 300만원 이상인 경우 37.9%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직장유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김두순, “임금근로자의 직장안정성 분석-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동향브리프, 한국고용정보원, 2017. 7., pp. 6~7.).

8)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재직 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임. 근로자와 사업주가 5년간 최소 2천만원 이상을 1:2 이상의 비율로 공동적립 하므로, 근로자는 5년 이상 장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액의 3배 이상(세전기준)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음(자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분야별 정책,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제29조의6(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이 조에서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의 공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핵심인력”이라 한다)가 공제납입금을 3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같은 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이하 이 조에서 “기여금”이라 한다)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9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50

나.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100분의 30

②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신청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함(「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6호).

들과의 형평성이 문제 될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58
